

2021 국민연금 100문 100답



이 책자는 참고자료로 활용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www.nps.or.kr>)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국민연금 100문 100답



Contents

I. 국민연금 제도

● 일반

1. 국민연금 제도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2.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3.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4.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5.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6.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나요?
7. 국민연금에서 대부는 받을 수 없나요?
8.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인한 혜택은 무엇인가요?
9.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10. 실업크레딧 제도란 무엇인가요?
11.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란 무엇인가요?
12. 국민연금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 기금 운용

13. 기금운용본부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규모와 운용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14. 국민연금 기금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나요?
15.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16. 국민연금이 주식투자로 많은 손실을 보았다는데 사실인가요?
17. 뉴스에 많이 나오는 국민연금 기금의 책임투자, 스튜어드십 코드가 무엇인가요?

II. 가입

● 일반

18.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19.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20.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군인)도 가입해야 하나요?
21.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2.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23.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24.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낼 수 없나요?
25.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6. 폐업(휴업)하였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27.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 지역가입자

28.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무엇인가요?
29. 납부예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30.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주면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31.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32. 소득이 없는데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33.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는데 기준소득월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34. 자동차가 있는데 연금보험료에 산정되나요?
35.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장가입자

36. 4대 보험 중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 있나요?
37.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하나요?
38.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9.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 소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40.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요?
41. 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임이사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42. 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43.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44. 출산 전·후 휴가일 경우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45.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46.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47. 지역가입자인데 다른 곳에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III. 연금보험료 납부

○ 일반

- 48.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49. 국민연금 미납하면 4대 보험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나요?
- 50. 국민연금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 51.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52.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이 뭔가요?
- 53. 반납을 하면 유리한가요?
- 54. 국가에서 연금보험료 지원은 안 해주나요?

○ 지역가입자

- 55.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나중에 꼭 납부해야 하나요?
- 56. 프리랜서인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 57.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혜택이 있나요?
- 58. 3년전 미납액을 내고 싶는데 못낸다고 합니다. 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이 무엇인가요?

○ 사업장가입자

- 59.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 60. 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 61.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때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나요?
- 62. 소규모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63.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납부를 안 한 경우 제가 내야 하나요?
- 64. 연금보험료 미납 시 체납처분(압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IV. 국민연금 지급

○ 일반

- 65.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66. 노령연금액은 왜 차이가 나나요?
- 67.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 68. 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 69.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내가 낸 연금보험료 내역을 알 수 있나요?
- 70. 물가가 오르면 받는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 71.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72.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 노령연금

73.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반납하고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나요?
74. 62세가 되어 연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75.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76. 현재 58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77.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78.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79.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80. 국민연금 8년 납부 후 공무원연금 15년 가입할 경우 연금 수령할 수 있나요?

● 장애/유족연금

81. 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82. 산재보험법상 보상을 받으면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83.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장애를 당했는데 장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84.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 6개월째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85.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86. 장애연금의 등급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87. 부인이 국민연금에 5년 정도 가입 중에 사망했습니다. 남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88.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89.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90. 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얼마전 재혼하셨는데 제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91. 교통사고로 배우자가 사망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했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92. 배우자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신청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사망/반환일시금

93. 가입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94. 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찾을 수 있나요?
95.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96.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97. 형편이 어려운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나요?

● 중복급여의 조정

98.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는데 제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받을 수 있나요?
99.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100. 장애등급 4급으로 일시금을 받았을 때 향후 노령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V. 온통프로 우수답변

1. 기금소진
2. 징수권 소멸
3. 사회보장협정
4. 4대보험
5. 추납 금액 변경 신청 가능여부
6. 반환일시금
7. 공적연금 연계
8. 분할연금
9. 사망일시금
10. 대학생 국민연금

[부록] 연린이를 위한 연금상식

1. 평생월금을 받다
2. 연금맞벌이를 하다
3. 임의가입을 하다
4. 내 연금을 조회하다
5. 연금 받는 시기를 미루다

I . 국민연금 제도

- 일반
- 기금 운용

1 국민연금 제도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사회안전망 역할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은 낮아지고 노인 인구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분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대부분의 노인이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어려운 노후를 보낼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최초로 시작되었고 현재 17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 1일, 근로자가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1999년 4월 1일에는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539만 명을 넘어섰고 가입자도 2,211만 명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www.nps.or.kr>) 연금정보의 "알기 쉬운 국민연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
-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

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모든 분들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노후에도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출산율이 낮아지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별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기초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세대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노후를 준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실시하여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통합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근로자에게는 권리이면서 사용자에게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3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62세부터 연금 수령(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 달라짐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시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인증 필요)

참고로 2020년 12월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93만원 정도입니다.

이 밖에 소득이 A값(2021년 기준 2,539,734원) 이하인 경우 현재 58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조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등)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4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적 연금제도, 개인연금은 사적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선택적 연금상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과거에 냈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물가가 상승하여도 실질가치가 보전되지 않아 받는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한 금액대비 실제 수령액을 보면 국민연금이 일반 개인연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고, 사망한 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 중 택할 수 있으며, 사망할 경우 지정인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됩니다.

세 번째,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본인이 희망한다고 하여 납부한 금액을 일시에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가족이 없는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공통점으로는,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연금도 상품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소득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으실 때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5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 가입대상, 납부하는 보험료율 및 지급받는 연금액이 다름
-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 재해보상급여도 포함

우선 가입대상이 다르고, 납부하는 보험료율 및 받는 연금액도 다릅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년)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1988년)은 이보다 늦게 도입되었으며 농어민(1995년), 자영업자(1999년)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연금제도는 도입시기와 배경이 다르고, 보장하는 범위도 다릅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는 국민연금제도와 달리 퇴직금, 재해보상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기업의 근로자들이 퇴직 시 퇴직금을 받는 대신 공무원들의 퇴직금은 공무원연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6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나요?

-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수급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가능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나,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2021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4만원입니다.

※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와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수준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정부분 감액한 후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수급대상여부, 예상 기초연금액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유료)] 또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국민연금에서 대부는 받을 수 없나요?

- 2012년 5월부터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대부 실시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대부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중 ⅓ 이상은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금융기관에서 긴급자금을 빌리더라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 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대 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 소요비용 (최고 1,000만 원 한도)

대부용도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신청기한

- 전·월세보증금 : (신규)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부이자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2021년 1분기 연 1.27% 분기별 변동금리)

대부상환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미거치, 거치 1~2년 중 선택, 최장 7년)

※ 세부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

8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인한 혜택은 무엇인가요?

- 해외 진출기업 및 파견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 문제 해결
-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연금수급권 확보

사회보장협정은 협정 체결국 간 연금제도의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여 양 체결국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이중가입이 면제됩니다. 협정 체결 전 상대국에 단기 파견된 근로자는 양국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본국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상대국 연금제도 가입은 면제되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각국의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가별 최소 가입기간 이상이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미국의 예를 들면, 협정 체결 전에는 미국 사회보장세를 9년 동안 납부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4년 동안 납부한 경우, 양국 모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협정 체결 이후부터는 각 납부기간에 대해 양국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때 중복된 기간이 있다면 한 번만 인정됩니다.

셋째, 협정이 체결되면 연금수급권 취득이나 급여 지급 등 상대국 법령 적용에 있어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넷째, 협정 체결국 간에는 연금 급여를 해외로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삭감되지 않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협정 시행국 [2019년 11월 기준 총 36개국]

효과	국가명
보험료 면제 (10개국)	이란(1978.6), 영국(2000.8), 네덜란드(2003.10), 일본(2005.4), 이탈리아(2005.4), 우즈베키스탄(2006.5), 몽골(2007.3), 중국(2013.1), 스위스(2015.6), 칠레(2017.2)
보험료 면제 + 가입기간 합산 (26개국)	캐나다(1999.5), 미국(2001.4), 독일(2003.1), 헝가리(2007.3), 프랑스(2007.6), 호주(2008.10), 체코(2008.11), 아일랜드(2009.1), 벨기에(2009.7), 폴란드(2010.3), 불가리아(2010.3), 슬로바키아(2010.3), 루마니아(2010.7), 오스트리아(2010.10), 덴마크(2011.9), 인도(2011.11), 스페인(2013.4), 터키(2015.6), 스웨덴(2015.6), 브라질(2015.11), 핀란드(2017.2), 퀘벡(2017.9), 페루(2019.1), 룩셈부르크(2019.9), 슬로베니아(2019.10), 크로아티아(2019.11)

9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출산크레딧·군복무크레딧이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 자녀수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

구분		2008. 1. 1. 이후에 얻은 자녀수					
		1인	2인	3인	4인	5인	...
2007.12.31. 이전에 얻은 자녀수	0인	0	12	30	48	50	50
	1인	12	30	48	50	50	50
	2인	18	36	50	50	50	50
	3인	18	36	50	50	50	50
	4인	18	36	50	50	50	50
	5인	18	36	50	50	50	50
	...	18	36	50	50	50	50

[군복무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재직(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군복무크레딧 인정대상 :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

10 실업크레딧 제도란 무엇인가요?

- 2016년 8월 1일 시행된 제도로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

2016년 8월 1일 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실업크레딧은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2020년 고시 기준)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소득기준]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초과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실업크레딧 재원 : 고용부 일반회계 25%, 국민연금 기금 25%, 고용보험 기금 25%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급여가 140만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70만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므로 6만 3천원이 월 보험료이며, 가입자가 이 금액의 25%인 15,750원만 내면 47,250원을 지원받아 1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11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란 무엇인가요?

- 국민의 체계적 노후준비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4대 분야별로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

과거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에게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했으나, 2015년 12월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에 따라 명칭이 ‘노후준비서비스’로 바뀌고, 대상도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노후준비서비스의 종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서비스로 나뉩니다.

구분	주요 내용
진단서비스	사회적관계, 건강한 생활습관, 소득과 자산, 여가활동 분야의 지표로 구성된 '노후준비 종합진단지' 작성을 통해 개인의 노후준비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
상담서비스	진단결과에 따라 분야별 노후준비 취약점을 파악하고 재무영역과 비재무영역(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맞춤형 상담 제공
교육서비스	맞춤형 강의를 통해 노후준비에 대한 객관적이고 다양한 정보 제공
관계기관 연계서비스	노후준비를 위해 타 기관 서비스 이용이나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으로 연계하거나 정보를 제공
사후관리서비스	상담 시 설정한 실천목표 준수여부의 주기적 점검 및 추가 정보 제공

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는 노후준비 종합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필요시 관계기관의 다양한 전문서비스 연계를 통해 노후준비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타 공공·민간영역의 개별적·부분적 서비스와 구별되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공단 지사(지역노후준비센터)에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받거나, 내연금 사이트(<https://csa.nps.or.kr>)에서 무료 종합재무설계, 간단재무설계, 목적자금설계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강을 원하는 개인은 '내연금 사이트'에서 강의 목록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고, 단체기업(기관) 등은 전문강사와 교육 일정·내용 등을 조율한 뒤 출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 국민연금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 예상연금액·가입내역·미납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연금 청구·취득신고·반납신청 등의 신고·신청 업무처리가 가능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연금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예상연금액, 가입내역 등을 조회할 뿐만 아니라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취득신고 등 각종 국민연금 신고·신청과 다양한 증명 발급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은 공동인증서·카카오페이·네이버 인증 로그인 방법을 통해 본인인증 후 이용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와 예상노령연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연금 수급자의 경우 수급계좌변경 업무 또한 가능합니다.

▶ 모바일 서비스 제공 현황

구분	서비스	비고
조회	예상노령연금,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가입내역, 받은 연금액, 과오납금, 연금소득원천징수, 연금보험료 미납내역, 연금보험료 지원내역, 일시금 지급내역 조회, 퇴직소득원천징수 내역, 장애/유족연금 예상조회,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대여금상환내역, 반납금납부현황, 추납보험료 납부현황, 추납보험료 미납내역, 환수금 납부내역, 실업크레딧 납부/미납내역 조회 등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네이버 인증
신고 신청	급여 상담예약신청(노령연금, 반환일시금, 장애연금, 사망관련급여, 공적연금연계, 기초연금), 연금(일시금) 청구, 지역가입자 취득신고, 지역가입자 납부재개, 연금수급자 계좌번호 변경,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임의가입자 가입·탈퇴, 임의계속가입자 가입·탈퇴, 반납금 납부 신청,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등	
증명 발급	가입증명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연금지급 내역서, 퇴직전환금 부과내역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노후 준비	내연금 알아보기, 노후준비자금 간편진단, 노후준비 종합진단, 교육 신청	

구분	서비스	비고
사업장	가입확인 대상 내역 조회, 사업장 기준소득 정기 결정, 보험료 지원 내역, 과오납금, 가입증명서, 납부확인서, 퇴직환급금 부과내역서, 사용자 부담금 납부 확인서, 증명서 진위확인, 사업장 가입자 취득 신고, 소득 총액 신고	공동인증서
기타	신고센터(자격확인청구, 실태조사, 연금보험료 지원금 누락 신고, 연금 보험료 지원금 미지급 신고, 부정수급신고, 사업장 가입정보 조회), 고객센터(채팅상담, 모바일 개선요청, 국민제안, 상담신청) 공단소식(새소식, 보도자료, 뉴스레터, 국민연금 포스트, 기금운용현황, 연구원발간자료)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네이버 인증
	고객센터(공지사항, 국민연금콜센터) 팩스보내기, 알림마당(기금운용현황, 연구원 발간자료), 상담센터(상담안내), 증명서 진위확인	비 로그인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금운용본부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규모와 운용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공단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관이 공단에게 위탁한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2020년 11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연금보험료와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된 1039.8조 원 중 연금급여 등으로 232.5조 원을 지출되어 807.3조 원(잠정) 적립되어 있으며, 기금 운용 본부는 기금 적립금의 금융투자자산에 대한 운용과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1988년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 기금의 누적 적립금이 증가함에 따라, 1999년 공단은 기금운용본부를 설립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2003년 100조 원, 2010년 300조 원, 2015년 500조 원에 이어 2020년 800조 원을 돌파하여, 2020년 11월 말 기준으로 잠정 807.3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운용지침에 따라 금융 부문과 복지 부문, 기타 부문으로 나누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의 금융부문 포트폴리오는 국내채권 40.4%(326.2조 원), 해외채권 5.3%(42.6조 원), 국내주식 19.6%(158.2조 원), 해외주식 23.3%(188.2조 원), 대체투자 11.1%(89.3조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로 2020년 11월 말 415.6조 원의 누적 운용수익금을 내어 기금적립금이 807.3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해외에서도 운용 역량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아태지역 금융투자 권위지인 Asia Asset Management誌로부터 ‘올해의 연기금 상’을, 세계적인 부동산 투자 전문지인 IPE Real Asset誌로부터 ‘아태지역 글로벌 투자자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금융투자 권위지인 The Asset으로부터 ‘올해의 연기금 상’의 수상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공단은 다양한 해외 언론으로부터 운용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14 국민연금 기금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나요?

- 국민연금 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하여 내·외부 감사 및 내부통제가 제도화 되어 있음
- 아울러,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주요 투자 현황 및 수익률, 거래기관 등에 대하여 공단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음

국민연금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만큼 제도와 기금운용에 대한 내부와 외부의 감사 및 내부통제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내부적으로 준법감시인을 별도로 두어 기금운용의 내부통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감사실은 정기적인 감사와 일상감사를 통해 자금운용계획에 맞추어 운용이 되고 있는지, 업무상 위법 사항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기관감사를 통해 기금운용 및 경영관리실태와 관련하여 상시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목적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지침에 명시한 기금운용원칙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을 성실하게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기금 운용지침

수익성 국민연금 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도록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높은 수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안정성 국민연금 기금은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공공성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가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유동성 국민연금 기금은 연금급여의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국내금융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지속 가능성 국민연금 기금은 투자자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운용 독립성 국민연금 기금은 상이원칙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운용 현황 및 수익률 등 별도로 정한 사항을 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기금의 운용현황과 방향을 투명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https://www.nps.or.kr/jsppage/fund/mcs/mcs_08_01.jsp)

15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국민연금법 제3조의2)
- 2020년 11월 말 기준 적립된 기금은 약 807.3조 원
1988년부터의 총 누적 운용 수익금은 약 415.6조 원

국민연금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므로 지급 중단 우려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관련 기사를 보신 것 같습니다. 이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정계산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에서 '기금 소진' 부분을 부각시키다보니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적잖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재정계산 결과는 현재의 보험료율(소득의 9%)과 미래의 경제성장률 및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 2057년경(제4차 재정계산 기준)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으로, 여러 상황이 변동되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 예로,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소진 년도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렇게 향후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므로 연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약 807.3조 원이며, 1988년부터 2020년 11월 말까지 기금운용으로 약 415.6조 원(잠정)의 운용 수익을 얻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금운용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16 국민연금이 주식투자로 많은 손실을 보았다는데 사실인가요?

- 국민연금은 기금의 안정적인 장기 수익 제고를 위하여, 주식 및 채권, 대체투자 자산에 다양하게 투자하고 있음
- 주식의 경우, 2020년 11월말 기준 기금 전체 포트폴리오의 19.6%를 차지하고 있고,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2020년 11월까지 162.5조 원의 누적 수익금을 얻어 기금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음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의 경우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운용지침, 중기자산배분계획 및 연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주식을 포함하여 채권 및 부동산, 사모투자 등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장기투자 수익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채권보다 장기수익률이 높은 만큼 위험도 따르기 때문에 공단은 감내할 수 있는 위험한도 내에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주식이 손실을 기록하였다는 2018년의 경우, 미·중 무역 분쟁, 선진국 통화긴축, 부실 신흥국 신용위험 부각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단기적으로는 기금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기간을 장기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주식투자는 채권보다 높은 수익이 발생하는 투자 자산군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1988년부터 2020년 11월 말까지 잠정적으로 국내주식 7.31%, 해외주식 9.71%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며 162.5조 원의 누적 수익금(국내 84.7조 원, 해외 77.8조 원)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채권 투자의 잠정 수익률(국내 4.51%, 해외 4.51%)에 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최근 금융시장 동향을 고려하였을 때, 특정 자산군 위주의 투자만으로는 적정수익률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 뉴스에 많이 나오는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스튜어드십 코드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책임투자) ① 증권의 매매 및 대여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책임투자 원칙은 별표 4와 같이 정한다.

제17조2(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의 투명성 및 독립성 강화, 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하기 위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고 기금운용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4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 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립형 기금인 국민연금 기금의 거대화로 주식투자 비중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적 연기금으로서 신뢰 확보, 투자 위험의 최소화 등과 관련하여 책임투자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책임투자는 과거 죄악주*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것부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와 사회·환경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까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죄악주: 몸과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사업 분야와 관련된 주식**

국민연금은 초장기 투자자로서 기금자산 운용에 여러 세대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재의 이익을 추구하는 특정 행위가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시장 규모 대비 대규모 투자자로서 국내 상장사에 분산 투자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특정 기업의 부적절한 행위가 다른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 주주활동을 행해야 합니다.

이에 2018년 7월 30일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의 일환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였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국민연금이 총직할 집사(steward)가 되어 국민 재산을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자율적 규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자체적으로 마련한 각 기관투자자는 대상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요소를 포함하여 중·장기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게 됩니다.

II. 가입

- 일반
-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18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 60세 미만이라면 공무원연금 수급 중인 분도 가입 가능(임의가입)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100만원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는 90,000원 이상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는 가입할 수 없으나, 원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거주 외국인도 해당)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공적연금을 매월 받고 계시는 중이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 하며, 2021년 1월 현재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인 100만 원을 기준으로 매월 90,000원(소득의 9%) 이상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을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원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의가입이란?

- **임의가입** :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이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
- **임의가입 대상**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4대 보험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
 -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학생이나 군인(납부이력 없는 경우) 등
-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
 - 최소 90,000원(2021년 1월 기준, 매년 변동)

19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사업장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고, 그 외의 분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
- 보험료는 본인 소득의 9%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4.5% 부담)

예,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장에 다니는 분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그 외의 분은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이하 동)로 지정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다니는 경우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로서 가입을 희망하지 않으면 본인이 적용제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임의가입을 할 경우 연금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2021년 1월 현재 32만원)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 최저 기준소득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음

20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군인)도 가입해야 하나요?

- 전업주부일 경우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나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 가능(임의가입)
- 학생(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야 함
-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또는 적용제외) 가능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분은 27세 미만은 적용제외, 27세 이후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취득신고서를 받았다면 공단 지사에 전화나 우편 등으로 신고하시면 납부 예외 또는 적용제외로 처리됩니다.

전업주부·학생·군인이라도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소득을 의미함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현재 중위수 소득 : 100만원, 연금보험료 90,000원)

21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득(납부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사업장가입자는 회사 4대 보험 업무 담당자가 신고, 개인사업자는 공단에 전화로 신고 가능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납부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취업하면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겠지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공단에 전화나 우편 등으로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연금을 받으실 때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55, 유료), 팩스 등으로 소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2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사업장가입자로 신고, 근로자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함
- 근로자 고용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신고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4.5%)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개인 사업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보냅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관할지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 연금보험료 및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2020년 7월 현재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2만원에서 최고 50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 됩니다.
- 신고 소득월액이 32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3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03만원보다 많은 때에는 50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며, 이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부과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7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3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 가능
-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 100만원의 9%에 해당하는 90,000원 이상으로 납부해야 함

예,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연금·타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신청 대상]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사업장가입 대상자는 제외)
- 가입자[타 공적연금가입자, 국민연금(사업장,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및 수급권자(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 있는 업무 종사 및 본인 신청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중인 자 제외)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분(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 제외)

[임의가입 신청대상 제외]

- 타 공적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 있는 업무 종사 및 본인 신청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중인 자 제외)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100만원에 해당하는 90,000원 이상입니다.(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

24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낼 수 없나요?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와
-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함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업자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큰 부담이 되겠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장애, 사망 시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가입하여 향후 그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가입기준]

- 단시간근로자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 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 건설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연금보험료율] 월평균소득의 9%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4.5%씩 부담)

25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으로 가능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 소득이 20% 이상 변동되면 조정 가능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영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연금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신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새로 조정된 연금보험료가 반영됩니다.

26 폐업(휴업)하였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 휴·폐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 납부예외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함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기간 면제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 소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시면 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수령할 연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공단에서 휴·폐업사실 확인가능 시)로도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중이라도 다시 소득활동에 종사하시면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납부예외는 본인이 폐업을 하였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7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 국내에 소득원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 소득원(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외체류 중이더라도 납부해야 함

단지 해외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로서 귀국예정인 없는 자라 하더라도 해외이주신고하지 않은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해외에 있어도 자동 이체 · 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있으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시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8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무엇인가요?

-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연금을 납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업장가입자 이외에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자의 종류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2015년 7월 29일부터 18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도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사업장가입자는 그 중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를 공제합니다.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을 말합니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며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임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하여 공단에 신청을 통해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가입이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 이전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9 납부예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소득이 없을 경우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 가능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신청을 하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국민연금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으셨다면 납부예외란에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한 후 해당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휴·폐업을 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와 휴·폐업 증명원을 제출(공단 휴·폐업사실 확인 시 제출 생략)하면 납부예외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납부예외 신청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서식찾기'에서 다운로드 가능)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나 납부예외(재개) 신청서를 받은 분들 중에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로 접속하여 개인 전자민원의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에 들어가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신청하면 지사 직원이 이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30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주면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국민연금 납입 의무도 갖게 됨
-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다는 것은 사업자로서의 세금 등 모든 의무를 책임진다는 의미

그렇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명의 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 데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려 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하고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명의 대여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며, 예금·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 또는 공매되는 것은 물론 대출금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출국 규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07년 1월 국세청에서는 명의 대여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자 명의를 빌려주지 말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명의를 빌려 주려면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국민연금도 명의대여 시 사업자등록 상 명의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또한 연금 수급 시에도 수급자(명의대여자)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1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납부해야 함
- 소득자료 확보 → 공단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안내 → 월 평균소득 신고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소득'의 범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등입니다.

새로이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공단이 소득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나 납부재개신고서가 발송됩니다. 여기에 월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을 기재하여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이나 농·어·임업 등의 소득이 없고, 임대(사업)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여 노후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모두 가입할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대한 유족연금이 또한 지급됩니다.(단, 2이상의 급여 발생 시 중복조정)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성실히 납부하셔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2 소득이 없는데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기간 연장 가능
- 공단 홈페이지 개인전자민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예,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고 계신 분들에게도 납부예외 기간이 끝나면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에서는 납부재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속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상태가 계속될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소득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방문이나 전화,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고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개인전자민원)에서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 자료가 없을 경우 한 번에 최장 3년까지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3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는데 기준소득월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은 농업·임업·어업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등을 합한 금액으로, 나중에 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 실제소득보다 높게 신고는 가능하지만 실제소득보다 낮게 신고는 불가

현재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월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이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데, 이때 소득이란 농업·임업·어업소득과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소득신고를 할 때는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가입 중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보험료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 연금보험료 및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2020년 7월 현재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2만원에서 최고 50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 됩니다.
- 신고 소득월액이 32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3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03만원보다 많은 때에는 50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며, 이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부과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7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34 자동차가 있는데 연금보험료에 산정되나요?

- 자동차 보유 여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 국민연금은 오로지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됨

아니요.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 비교

구분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사업, 근로, 농업, 임업, 어업) ※ 본인의 희망에 따라 소득보다 높게 납부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 재산(임차주택 보증금 및 월세, 자동차 등)
임의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높게 납부가능 	-
사업장(직장) 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 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하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 근로)

※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됨

※ 국민연금은 개인단위로 부과되며, 건강보험은 세대단위로 부과됨

35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장 퇴사신고는 회사에서 신고하므로 본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60세 전에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함. 소득이 없을 땐 납부예외 신청 가능.
- 배우자가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 지역가입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임의가입은 가능

회사(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 담당자가 신고하게 되므로 개인적으로 퇴사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60세 전에 퇴사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직원이 퇴사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후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며, 개인이 별도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퇴사자는 관할지사에 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이 되는데, 이때는 본인이 관할지사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신고를,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방문이나 우편, 전화 및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36 4대 보험 중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 없나요?

-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함
- 국민연금만 신고 안하면 4대 보험 자료 연계로, 나중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도 있음

예,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인 이상 사업장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국민연금 공제금액이 아깝다는 생각으로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4대 보험만을 신고했을 경우, 각 기관 간 전산자료가 공유되기 때문에 향후 연금보험료가 소급되어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61세(~65세) 이후 10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매년 통계청이 고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이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성실히 납부하여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7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하나요?

국민연금 은 비과세금액 제외한 소득월액의 9%, 건강보험 은 6.86%, 고용보험 은 비과세금액 제외한 보수월액 기준 실업급여는 1.6%(고용안정사업등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 산재보험 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

개인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해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험으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9%가 부과되고, 건강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6.86%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고용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는 0.8%를 부담하고, 사업주의 부담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1.52%가 부과되어 건강보험료에 합산·고지됩니다.

※ 4대 보험 보험료율(2021.1. 기준)

구분	보험료율	근로자	사용자(사업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9%	4.5%	4.5%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6.86%	3.43%	3.43%
고용보험		보수월액의 0.8%	보수월액의 0.8% 고용안정사업등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 있음
산재보험	업종에 따라 차이 있으며 사업주 전액 부담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1.52%	근로자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38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생략
- 그 외의 경우 매년 5월 말까지 전년도 소득총액을 내방, 우편, 팩스, EDI, 인터넷, QR 웹팩스, 모바일 등으로 신고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란,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신고하게 되는 소득총액은 전년도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입니다. (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현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동안 받은 소득총액)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결정을 하고 소득총액 신고를 생략하므로, 사업장에서는 공단으로부터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매년 5월까지 공단에 소득총액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총액 신고방법

- **서면신고** :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소득총액신고서에 기재·날인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
- **EDI 신고** : EDI 종합민원 서비스를 통하여 사업장에서 직접 신고
- **인터넷 신고** : 신고대상 100인 이하 사업장은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www.4insure.or.kr)로도 신청 가능(단,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필요)
- **QR웹팩스 신고** : QR코드를 활용한 웹팩스 신고(QR : Quick Response)
- **모바일 신고** :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설치 후 신고 가능

39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 소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 일부 수당, 식대, 연구보조금 등은 비과세 소득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9%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월 연금보험료로 고지됩니다. 이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거 국민연금법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무보수 위원(학술원·예술원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 ▶ 승무 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사대
- ▶ 일직·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
- ▶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
- ▶ 선원법에 의한 선원(선장 및 해원,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이 받는 20만원 이내의 승선 수당
- ▶ 광산근로자가 지급 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 방송·통신·일간신문 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기자(상시 고용된 논설위원, 만화가 포함)가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 ▶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 ▶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함), 사망일시금
-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 등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비과세 소득 중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국민연금법상 소득으로 인정

40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요?

- 기본적으로는 두 군데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함
- 두 곳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선 이상이나 그 미만이나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예,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각각의 사업장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5,030,000원, 2020.7~2021.6.)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예)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일 때, 연금보험료 90,000원/본인 납부금액 45,000원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일 때, 연금보험료 180,000원/본인 납부금액 90,000원

둘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5,030,000원, 2020.7~2021.6.)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예)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320만원이고,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480만원일 때,
A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320 / (320 + 480) \times 5030000 = 2,012,000$ 원으로
연금보험료는 181,080원(본인 납부금액 90,540원)이고,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480 / (320 + 480) \times 5030000 = 3,018,000$ 원으로
연금보험료 271,620원(본인 납부금액 135,810원)

두 곳에서의 총 소득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이면 상한선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만큼 나누어 내고, 상한액 미만일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41 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임이사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년 6월 7일 부터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
- 비상임이사는 2010년 9월 1일 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발생 유무에 따라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년 6월 7일부터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에서 모두 제외되어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상실신고를 하고 개인적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비상임 이사는 2010년 9월 1일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대상이며, 60시간미만 근로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신고서 및 이사회회의록·정관 등으로 무보수를 입증하고, 비상임이사는 근로소득이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 서류를 자격상실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무보수 대표이사가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유지되면서, 국민연금만 무보수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2 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엔 기존 사업장가입자로 납부하는 금액만 납부
-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두 곳의 소득의 합이 503만원을 기준으로 달라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따로 사업자등록(개인사업)을 내고 그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만약 사업자등록만 내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의 사업장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즉,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될 때 사업장가입자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낸 분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의 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2곳의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고 각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질문 40>를 참고하면 됩니다.

43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다음 달 15일까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고
- 우편, 팩스, 인터넷, 전화로도 가능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장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사업장 사용자는 다음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용 공동인증서(개인사업장인 경우 사용자의 개인 공동인증서도 가능)가 있으시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필요시)

44 출산 전·후 휴가일 경우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산전 후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납부예외 가능

출산 전·후 휴가 중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수당을 받는 기간 중에는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을 다니던 중 출산을 위해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예외 신청 기간이 달라집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90일의 기간 동안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게 되어 90일 동안 납부 예외가 인정되고,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 동안만 휴가급여를 받게 되므로 30일만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45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 가입대상

예. 그렇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째, 그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사회 경제적 위험분담 형태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예를 들면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상호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셋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넷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다섯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외국인

46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 단시간근로자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
-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
-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하면 가입 대상

사업장가입자의 요건이 되는 경우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는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도록 계약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입니다.

둘째,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는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당연가입대상이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적용제외 가능(2015.7.29. 국민연금법 시행)
- ▶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지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지급권을 취득한 자(단, 공적연금연계신청자는 제외)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당연가입대상이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적용제외 가능
-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
-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소득이 없는 자
- ▶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47 지역가입자인데 다른 곳에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취업을 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며 연금보험료는 본인 4.5%, 사용자가 4.5% 부담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개인별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를 말합니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다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처리 됩니다.

즉, 개인적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고 사업장으로 연금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이때,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그 중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나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나,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지 않는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는 월 급여에 맞게 소득신고를 하면 되고,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III. 연금보험료 납부

- 일반
-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48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나중에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음
- 미납한 보험료는 원하는 월만큼 선택하여 고지서 등을 통해 분할 납부 가능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웠을 경우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등을 충족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초진일 또는 사망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연금수급권이 인정됩니다.

즉,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①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 ② 초진일(사망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 ③ 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초진일 또는 사망일이 2016.11.30. 전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음

이처럼 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납액이 있을 경우 납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므로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미납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로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이때는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미납 기간에 대해 최장 24회에 걸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49 국민연금 미납하면 4대 보험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나요?

- 국민연금 미납과 회사취업은 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미납과 회사취업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해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취업을 위한 서류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입증명서에 이전 사업장의 이력이 포함되기 때문에 경력증명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도 미납내역은 표기되지는 않습니다.

혹시 기업에서 채용 시 정책적으로 국민연금 미납을 개인의 신용평가로 활용하는 곳이 있어 납부증명서를 활용한다면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취업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에서는 새로 취업한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이전 사업장 미납내역을 통지하지 않으며, 사용자도 근로자의 해당 사업장 내역만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전 사업장의 납부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50 국민연금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 노후에 받게 될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고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소득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하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됨

국민연금을 안내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이라도 신고 없이 체납하고 있다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하여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상실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납부예외는 소득활동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나중에 수령할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반드시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51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부담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하여 신고 가능

소득공제를 위해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07년부터 공단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 중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발급을 원하신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사이트(사업장가입자는 발급 불가)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2016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위해 부담한 사용자 부담금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하여 필요경비로 공제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필요경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사용자부담금 납입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 공제 대상 연금보험료 납입 금액을 확인해야 했으나, 2016년 5월부터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용자 부담금 납입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었습니다.

해당 연도의 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 또는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조회발급서비스/증명서발급신청)', '국민연금홈페이지(개인민원/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공동인증서 필요)

공제 대상 연금보험료는 매년 1~12월 중 납부하신 금액(사업장가입자는 본인 납부액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 3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 및 연체금을 제외하고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2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이 뭔가요?

- 납부예외 기간과 연금보험료 납부 이후 적용제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음 (단, 120개월 미만으로 신청 가능)
- 추납을 신청하려면 먼저 납부예외·적용제외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추납(추후납부)은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 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제외 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추납이 가능한 적용제외기간이란 무소득배우자(1999년 4월 1일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2001년 4월 1일 이후) 또는 1년 이상 행방불명(2008년 1월 1일 이후)의 사유로 적용제외된 기간으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의 적용제외기간을 말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다시 납부한다면 최초 연금보험료 납부일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1999년 4월 이후)에 대해 추납 가능하며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납부하지 않더라도 반환일시금 지급기간에 포함된 납부예외 기간은 추납할 수 있습니다.

추납신청은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인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추납을 할 수 있습니다. 추납보험료는 추납 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A값(2021년) : 2,539,734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추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추납대상기간	분할납부횟수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개월 수)	월 단위 최대 60회

추납보험료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 혼인이력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요로 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고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53 반납을 하면 유리한가요?

- 반납은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반환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것
-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의 이력을 복원시키므로 가입자에게 유리

반납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 경과하면 반환일시금 청구 가능했음).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2021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3.5%로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40%가 될 것입니다.

구분	1988년~1998년	1999년~2007년	2008년~2027년	2028년 이후
소득대체율	70%	60%	50% (매년 0.5%씩 감소)	40%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시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신청대상기간에 따라 3~2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반납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예금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반납 전·후의 예상연금액을 비교해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 문의하여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54 국가에서 연금보험료 지원은 안 해주나요?

-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저임금 사업장가입자(근로자)에 대하여 국가에서 연금 보험료의 일부 지원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소득 220만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에 해당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 2021년1월1일부터 월 보험료가 90,000원 이상이면 월 45,000원을, 월 보험료가 90,000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1/2만큼을 지원합니다.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한 후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평균소득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라고 하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80%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가입근로자
(다만, 지원신청일 직전 3개월 사이에 취득신고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제외하고 판단)

※ 월평균소득 220만원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 (소득기준) 종합소득 연간 합이 3,800만 원 이상(단, 2020. 12. 31. 이전부터 계속지원 중인 자는 '21.4월까지 근로소득 2,838만원, 근로소득외 종합소득 2,100만원 이상 적용)

55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나중에 꼭 납부해야 하나요?

-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나중에 소급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됨
- 나중에 받게 될 연금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납부하는 게 유리

아닙니다.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납부예외 제도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향후 소득이 생기더라도 납부예외 기간 중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가입기간을 늘려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노령연금은 최소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금수급개시연령(출생연도별로 60~65세)에 도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을 많이 받기 위하여 신청하시는 경우 추후납부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6 프리랜서인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 프리랜서도 국민연금 납부해야 함
-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대상

예. 프리랜서도 국민연금공단에 월평균소득을 신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했을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이 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게 된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이때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취득신고를 하게 되는데,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고지되며,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가 공제됩니다.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월평균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월평균소득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공단에 증빙자료 제출 후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7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혜택이 있나요?

-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월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지원 받을 수 있음

예. 그렇습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현재 월 보험료가 90,000원 이상인 분은 월 45,000원이, 월 보험료가 90,000원 미만인 분은 보험료의 1/2만큼이 지원됩니다.

국민연금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금액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1/2 금액을 보조하되, 2021년 1월 현재 최대 월 45,000원이 지원됩니다.

월 보험료에 따른 농어업인 국고보조 지원액

월 보험료	90,000원 이상	90,000원 미만
지원액	월 45,000원 정액 지원	월 보험료의 1/2 정률 지원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위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이라면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III. 연금보험료 납부 >>> 지역가입자

58 3년전 미납액을 내고 싶는데 못낸다고 합니다. 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이 무엇인가요?

- 국민연금법 제 9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보험료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본인이 원해도 납부할 수 없음

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이란,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보험료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본인이 원해도 납부할 수 없고, 강제징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연금보험료 미납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을 지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①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
 - ② 초진일(사망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 ③ 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 초진일이 2016.11.30. 이전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음

이처럼 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납액이 있을 경우 납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미납액은 최대 2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 미납액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 2011년 1월 1일 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59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 1일 입사자는 해당 월부터, 1일이 아닌 날짜 입사자는 다음 달부터 납부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1일 입사가 아니더라도 해당 월부터 납부 가능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납부하면 됩니다.(입사일이 1일이거나 직원이
입사 월부터 납부를 원하는 경우는 해당 월부터 납부)**

직원이 새로 입사하게 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한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 부터 적용)

다만, 1일자가 아닌 월 중에 입사한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납부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1일이 아닌 다른 일자로 입사한 경우는 그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월급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60 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 월 단위로 부과하고 나중에 받게 될 급여도 월 단위로 지급

예, 국민연금은 월단위로 연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도 월단위로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한 달에 1주일을 근무하셨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본인이, 나머지 50%를 회사가 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의 4.5%입니다.

예를 들어 금년 1월 1일에 입사해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 1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10월 7일에 퇴사했다면, 10월 달 연금보험료는 9만원이 고지되고 본인의 월급에서는 4만5천원이 공제됩니다.

이때 근무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데도 한 달 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월 단위 보험료 부과는 국민연금 급여 지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최소 가입해야 하는 기간은 120개월입니다.

또한 연금을 지급할 때도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일에 사망한 경우 3일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한 달분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직장에 새로 입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입사일이 초일이 아닐 경우에는 입사한 달이 아닌 다음 달부터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때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소득금액에 미포함
- 인센티브는 소득에 포함, 다음 해 소득총액 신고 시 반영되어 보험료 부과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연금보험료 산정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상여금)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다음해 소득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됩니다.

국민연금에서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 연장시간근로·야간·휴일수당, 인센티브 및 각종 상여금 등은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며, 퇴직급여(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 원 이하 식사대 등은 비과세 급여로 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인 경우 별도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인센티브는 소득으로 포함되나 바로 연금보험료로 공제되지 않고 다음해 소득총액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되어 연금보험료가 적용됩니다.

62 소규모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해당 사업장에 저임금 근로자(월 소득 220만원 미만)가 근무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하는 분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분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법인 대표이사 제외)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준소득월액이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80%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근로자
(다만, 지원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에 취득신고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제외하고 판단)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 180,000원이며 이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90,000원)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받는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연금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게 되어 각각 18,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소득이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소득기준] 종합소득 연간 합이 3,800만 원 이상(단, 2020. 12. 31. 이전부터 계속지원 중인 자는 '21.4월까지 근로소득 2,838만원, 근로소득의 종합소득 2,100만원 이상 적용)

보험료 지원은 별도로 현금 지원이 아니며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익월 10일)까지 완납하면 다음달 보험료에서 당월분 지원금만큼을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미납(과소납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여 해당 사업장 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또는 국민연금 EDI(<https://edi.np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63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납부를 안 한 경우 제가 내야 하나요?

-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음
- 기여금 개별납부를 신청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음

아닙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었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며, 혹여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연금을 수령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사유가 생겼을 때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을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고자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을 보면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있는데,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납부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시 필요서류는 기여금 개별납부신청서,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신분증이며,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부터 10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징수 효율화를 위해 2011년 1월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있으니, 기여금 개별납부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연금보험료 미납 시 체납처분(압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고의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 위주로 압류 등의 체납처분 실시
- 체납은 전체 기금안정과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해할 수 있음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후복지를 표방하는 국민연금이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납부의무자를 더욱 더 곤궁에 빠뜨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세나 다른 공과금처럼 징수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수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모든 가입자에게 다시 연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전체 기금안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 본인도 그 체납기간으로 인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징수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체납처분 및 체납처분 해제에 대해서 궁금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1년 1월 1일 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IV. 국민연금 지급

- 일반
- 노령연금
- 장애/유족연금
- 사망/반환일시금
- 중복급여의 조정

65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62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국민연금의 급여는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연금급여는 가입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일시금급여**는 연금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부터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액을 매월 지급해 드리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57세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1953년생 이후 부터는 출생연도별로 56~60세부터 수령), 제도 도입 및 확대 당시 고령으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기 어려운 가입자를 배려하여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도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와 이혼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에게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가 남았을 때 공단에서 장애정도(1~4급)를 심사하여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과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가입자(가입자였던 분 포함)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와 같이 향후 국민연금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가입자(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를 유지한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66 노령연금액은 왜 차이가 나나요?

-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본인의 소득 수준과 납부기간에 따라 달라짐

노령연금액은 같은 시기에 같은 기간을 납부하더라도 해당기간 동안 소득이 다르다면 수급액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만원(9만원 보험료)인 분과 300만원(27만원 보험료)인 분의 수령액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 평균소득월액(A값) : 2,539,734원

(2021년 기준)

소득월액	연금보험료(월)	가입기간	노령연금 수령액
100만원	90,000원	10년	183,180원
		20년	360,160원
		30년	537,150원
300만원	270,000원	10년	286,680원
		20년	563,660원
		30년	840,650원

- 2021년 1월 신규 가입 가정

67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제외한 노령(분할)연금과 반환일시금은 연금 수령 시 세금 공제 후 지급
-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

예,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과세 기반 확충 및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분	2001년 이전	2002년 1월 1일 이후
연금보험료 납부시	소득공제 불인정	소득공제 인정
급여 수령시	비과세	과세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 징수하고 연말정산시 정확한 결정세액을 확정하여 정산결과를 다음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따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68 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 연금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면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아버님에게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과세대상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원을 차감하여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은 아버님께서 한 해 동안 수령한 연금액 전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이며,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분할)연금액은 과세제외 소득이기에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시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은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전자민원서비스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이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다음연도 2월 이후)」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69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내가 낸 연금보험료 내역을 알 수 있나요?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래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그동안의 납부내역 조회 가능
- 건강, 재무, 일, 여가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음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내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공동인증서 필요)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60세 또는 연금수급 가능 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내연금 홈페이지(csa.nps.or.kr) - 국민연금 예상연금조회'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공단 홈페이지의 '예상연금 간단계산'에서 월 납입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입력하거나, 내연금 홈페이지의 '국민연금 모의계산'에서 과거 및 미래의 소득을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 향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인이나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내역은 「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개인민원/사업장민원 →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내역을 조회하는 또 다른 방법은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 경우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또는 네이버 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본인의 국민연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 재무, 취미·여가, 일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70 물가가 오르면 받는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수령액도 조정됨
-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예, 물가가 오르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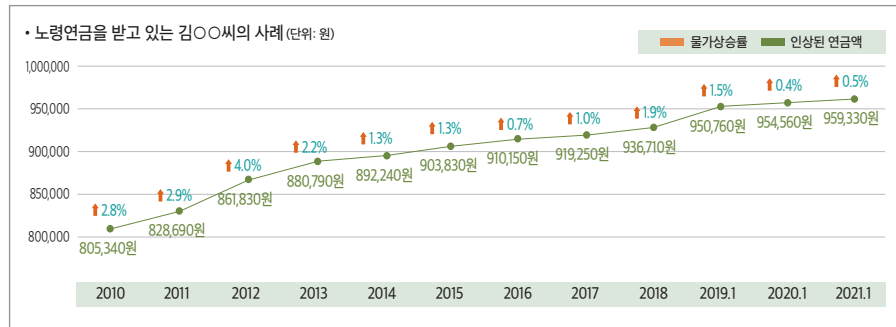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 전국의 소비자 물가 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 국민연금법 개정(2019년 1월 15일 시행)으로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가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졌습니다.

▷ 참고 1 : 연금액 인상비율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2.8%	2.9%	4.0%	2.2%	1.3%	1.3%	0.7%	1.0%	1.9%	1.5%	0.4%	0.5%

▷ 참고 2 : 노령연금 수급자 연금인상액 사례



※ 2010년 대비 153,990원이 인상된 연금을 2021년 1월부터 받고 계신 사례

71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 수령 시 부양가족연금 추가 지급
- 2021년 1월 현재 배우자 연 263,060원 (월 21,920원), 자녀나 부모 1인당 연175,330원(월 14,610원) 지급

예,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는 분(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의)의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부모(62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로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와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를 포함하여 인정합니다. 부모, 계자녀, 계부모 그 외 기타의 관계인 분들은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기타의 관계는 사망한 가입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나, 수급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2021년 1월 현재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일 경우 연 263,060원(월 21,920원)이며, 자녀·부모의 경우에는 1인당 연 175,330원(월 14,610원)이 지급됩니다.(매년 1월 기준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인상됨, 2021년 조정률: 0.5%)

다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계시는 분은 다른 분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 부양가족연금대상자 신청 시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류,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인 부모의 연령 : 급여지급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됨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가 있는 자는 공단에서 정한 별도의 장애등급 2급 이상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가족연금 계산대상으로 인정

72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 185만 원 이하의 연금수령액은 압류할 수 없음
- 국민연금 전용 '안심계좌'를 이용하면 압류로부터 보호됨

185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이기에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계좌가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 압류금지금액인 185만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압류금지액 변경시 연동 변경

이 또한 지금 당장 연금 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들에게는 번거로움이 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 제도를 법제화하였습니다.

'안심(安心)통장'은 현재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 계좌는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안심통장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현재 185만원) 이내로 입금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 수령액이 위의 수급권 보호금액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 수급계좌를 신청하셔야 하며, 일시금급여는 수령액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수급전용계좌 발급 기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단위농협,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중앙회,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73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반납하고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나요?

- 60세가 되어 이미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는 다시 반납이 불가능
- 일시금으로 받지 않은 상태라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연금수령 가능한 최소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음

예, 60세(~65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0세에도 가능)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연금수급연령이 되어도 그 기간을 못 채워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60세 이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불로 받는 것은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받고 국민연금과의 법률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60세가 되어 본인의 청구로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고 결국 반납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자동상실되어도 일시금으로 지급받지 않아 가입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65세 전까지 재가입(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연령

출생연도	1953~1956년생	1957~1960년생	1961~1964년생	1965~1968년생	1969년생~
수급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74 62세가 되어 연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가까운 지사방문이나 우편, 팩스, 인터넷(모바일) 신청도 가능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가 됐을 때 받게 되는 노령연금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모바일)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운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부터 매월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가 있는데, 이를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노령연금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되며,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공단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모바일)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

- 노령연금 청구서(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거나 지사에서 직접 작성)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경우 여권정보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권정보증명서는 국내의 여권접수기관 및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본인명의 예금계좌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 도장(서명가능)

75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 지급

예, 이를 분할연금이라 하는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30일 부터는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공단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분할연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청구하셔도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부터 지급해드립니다.

분할연금액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합니다. 예외적으로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부터는 당사자간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에 의해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배우자가 매월 노령연금 150만원을 받고 있던 중 본인(분할연금 수급권자)이 수급연령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하여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 10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 100만원중 50만원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간에 분할비율을 6:4 (노령:분할)로 별도 합의하였다면 40만원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혼 기간 중이었으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실종선고기간·거주불명등록기간·당사자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018.6.20.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부터)

분할연금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동안 이혼한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 부분을 인정하고 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에 따라 분할연금수급가능연령도 이에 맞추어 상향

출생연도	~1952년	1953~1956년	1957~1960년	1961~1964년	1965~1968년	1969년~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76 현재 58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2,539,734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 수급 가능
- 다만 미리 받을수록 그만큼 감액지급

예,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62세 이전에 연금을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연령이 58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62세 이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1년도 'A값'은 2,539,734원입니다.

따라서 2021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2,539,734원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소득공제 전 월 3,502,629원(연 42,031,552원)에 해당 (2021년 기준)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수급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함에 따라 일정 수준(1년마다 6%,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 연령

출생연도	~1952년	1953~1956년	1957~1960년	1961~1964년	1965~1968년	1969년~
노령연금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㉗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연금 지급을 연기하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됨
- 지급을 연기한 만큼 연 7.2%(월 0.6%) 연금 수령액이 늘어남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의 연기는 2012년 7월부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며, 연기신청 후 65세(~70세)가 되면 연금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지급받게 됩니다.

※ 연기연금도 연령상향 조정대상임('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시작), 66세~70세(종료)로 상향)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29일 이후 연기 신청자부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분(50%~90%, 10% 단위)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중 연기비율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연기연금 신청대상 및 지급 가산율

구분	2012년 6월 이전	2012년 7월 이후
신청대상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수급자 (조기노령연금 포함)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수급자 (조기노령연금 포함)
지급 가산율	연 6%(월 0.5%)	연 7.2%(월 0.6%)

78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월 평균소득금액이 2,539,734원을 초과하면 '연금수급개시연령+5세'가 될 때까지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됨. 그 이후부터는 소득액에 상관없이 전액 지급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21년 현재 2,539,734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급개시연령 미만인 기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정지하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조기노령연금 포함)가 연금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 기준금액을 'A값'이라고 하며, 2021년도 'A값'은 2,539,734원입니다. 만약 2021년도의 사업소득 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무(종사)월수로 나눴을 때 2,539,734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소득공제 전 월 3,502,629원(연 42,031,552원)에 해당 (2021년 기준)

예를 들어, 2021년 현재 1960년생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소득활동을 계속해서 한다면 62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62세 이상~67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소득활동에 따라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2015년 7월 29일 이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수급자부터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면 초과 소득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최대 노령연금액의 1/2 감액)

예를 들어 노령연금월액이 80만원인 수급자의 소득월액이 A값보다 60만원이 높을 경우 60만원의 5%인 3만원을 감액하여 매월 77만원을 지급받습니다.

(2015년 7월 29일 법개정)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소득구간별 감액표(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 취득자)

A값 초과소득월액	노령연금 지급 감액산식	월 감액 금액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분의 5%	0~5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5만원+ (1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10%)	5~15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5만원+ (2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15%)	15~3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20%)	30~5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50만원+ (4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25%)	50만원 이상

※ 2015년 7월 29일 법 개정 전에는 A값을 초과할 경우 초과소득의 다소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노령연금액의 일정 비율(연금액의 50% ~ 10%)을 감액하였음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연령별 지급률(2015년 7월 29일 전 수급권 취득자)

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지급률	50%	60%	70%	80%	90%

79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입 중에는 반납,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 이용 가능
- 연금수급요건을 만족했다면 연금지급의 연기(연기연금)를 고려해도 좋음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 등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이 높을수록 그만큼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이 중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에는 반납,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반납이란 1999년 이전 직장 퇴사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환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하는 것이므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 아주 유리합니다.

추납이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향후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돼 연금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사업중단·실직 등의 납부예외 기간 뿐 아니라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군복무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법의 재직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무소득배우자(1999.4.1. 이후), 기초수급(2001.4.1.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2008.1.1. 이후) 등으로 인한 적용제외기간에 대해서도 추납이 가능합니다.(다만 추납신청은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10년은 채웠지만 연금수령액을 높이려고 하는 분들이 가입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합니다.[※ 60세에 도달하여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거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이 외에 **연기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만족했지만 연금 수령의 연기를 원한다면 1회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50%~100%를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하는 매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연 7.2%)씩 늘어나므로 연금액을 높이는데 유리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자·수급자의 연금 혜택을 위해 각 지사(상담센터)마다 행복노후준비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 재무, 여가 등 다양한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으니 방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80 국민연금 8년 납부 후 공무원연금 15년 가입할 경우 연금 수령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이면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통해 각각의 가입기간에 대한 국민연금과 타 공적연금 모두 수령할 수 있음

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20년을 넘으면 각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공무원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공무원에 재직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10년이 안되고 공무원연금 가입기간도 10년이 안되는 경우에는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8월 7일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2016년 1월 1일 이전 공무원 퇴직자는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충족되어야 수급권 발생 (군인연금은 현행 20년 유지)

공적연금 연계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 시행일(2009년 8월 7일)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경우
2.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2007년 7월 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3. 법 공포일(2009년 2월 6일) 당시 각 연금에 가입(재직) 중인 자가 법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기한 :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되기 전까지)에 연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때(기한 : ①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 ②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연계하려는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연계신청을 하시면 향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해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각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적연금 연계제도 사이트(www.ppsl.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1 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완치 후 또는 1년 6개월 경과 후 청구 가능
- 보험사와 합의 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금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연금지급이 정지됨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는 분에게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이로 인해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사고와 관련한 장애가 완치된 이후(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어도 교통사고의 경우처럼 제3자의 가해로 장애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연금의 지급이 정지(최대 60개월)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제3자 가해와 관련된 서류 및 손해배상금 수령내역 등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연금액은 공단이 구상금으로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됩니다.

쿠비서류

기본적인 장애연금 신청서류 외에 추가로 판결문, 합의서 등 손해배상액이 확인되는 서류 또는 가해자 관련서류가 필요함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애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절반만 지급
-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으로 중복지급 제한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애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고,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도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아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 그 정도를 심사하여 정해진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물론 동일한 장애로 산재보험법상 장애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애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른 한쪽에서는 그만큼 급여를 조정 또는 제한함으로써 특정사고에 대하여 급여가 중복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83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장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에 따라 지급
- 완치되지 않은 상병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

장애연금이란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으로,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1급~4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또한 질병 또는 부상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단, 다음의 초진일*(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장애심사규정에서 초진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 2016년 11월 30일 이후 초진일이 있는 경우

초진일 요건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사이에 있고, 다음의 ① ~ ③ 기간에 있지 않아야 함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②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단,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 다음의 ① ~ ③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가입기간이 3년 이상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2016년 11월 30일 전 초진일이 있는 경우

초진일 요건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초진일이 있어야 함	미납기간이 전체 고지기간의 1/3 미만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 ~ 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때,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84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 6개월째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투석 3개월 경과 후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음

만성신부전증의 경우 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청구 및 지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완치일 또는 미완치 질병의 경우 1년 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초진일 또는 완치일에 대해서 장애심사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만성신부전증은 주 2회 이상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과 신장이식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신부전으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주 2회 이상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다면 심사를 거쳐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요법을 받고 있으나 주 2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장애심사를 통해 장애등급 해당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장애등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국민연금에서 심사·판정)은 1~4급으로 구분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장애등급별 지급률

장애등급	장애 1급	장애 2급	장애 3급	장애 4급
지급률	기본연금액 100%	기본연금액의 80%	기본연금액의 60%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일시금

85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 장애연금 수급 중이라도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가입해야 함
- 소득이 있으면 연금보험료 납부,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장애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업을 하시거나 농어촌 지역에 사시는 분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전체 국민의 평균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전 국민에 대하여 당연히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연금을 지급받고 계시는 분이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여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까지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지급받는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연금을 지급받으시는 분도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지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셔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86 장애연금의 등급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요건 및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공단에서 장애등급(1~4급) 심사

장애연금 해당여부 결정을 위한 장애심사는 장애의 원인이 되었던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장애등급을 심사합니다.

여기에서 장애등급(1~4급)의 심사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라 필요시 전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을 실시하여 공단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단에서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는 완치일,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6개월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심사결과, 장애정도가 경미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장애등급에 미치지 못하면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초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의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치료 경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후에 다시 등급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결정 및 장애심사의 적정성을 위하여 공단은 전문과목별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의과대학 교수 또는 동 부속병원 종사자, 국·공립의료기관 종사자, 기타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문의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으며, 그 심사 결과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등급이 상향되면 그만큼 연금액이 늘어나며,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이 내려가거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87 부인이 국민연금에 5년 정도 가입 중 사망했습니다.
남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남편도 유족연금 수급 가능
-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일시금으로 수령

예, 부인이 사망했을 경우 부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남편도 아래의 유족연금 수급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요건]

-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 ③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 ④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 5년간 3년 이상인 경우
-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유족연금 수급요건 중 ③,④의 경우 사망일이 타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중에 있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망자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3년 동안 지급받게 되고, 3년 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 (2021년 기준 2,539,734원)을 초과하면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55세(출생연도에 따라 60세까지 상향 조정)부터는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또한 본인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25세 미만 (2016년 11월 29일 이전은 19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계속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으로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연령도 출생연도에 따라 상향조정(2013년 1월 1일 이후 유족연금 지급사유 발생 건부터 적용되며 1953~1956년생은 56세, 1957~1960년생은 57세, 1961~1964년생은 58세, 1965~1968년생은 59세, 1969년생 이후는 60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가 있는 자는 공단에서 정한 별도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인정

2007.7.23. 전에는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 남편은 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이어야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개정법 시행일(2007년 7월 23일) 이후에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나이 또는 장애와 상관없이 부인의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남편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88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에게 지급
- 배우자,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 등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 대상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아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됩니다.(법 제73조)

1. 배우자
2.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일정기간의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망일이 타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중에 있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 유족연금 금액은 얼마나 될까?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더해져 매달 지급됩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연금액	기본연금액의 40%+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50%+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60%+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지급율 100%)

※ 연금수급연령 상황에 따라 부모와 조부모의 유족연금 연령요건도 61~65세로 상향
(2013년 1월 1일 이후 유족연금 지급사유 발생건부터 적용되며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가 있는 자는 공단에서 정한 별도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인정

89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21년 기준 2,539,734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지급을 정지
- 사망 후 최초 3년간, 55세(~60세) 이후부터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 지급

최초 3년간 유족연금 지급 후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2,539,734원(2021년 기준)을 초과하면 55세(~60세)까지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사망한 분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최초 3년 동안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3년 이후부터 55세(~60세)가 될 때까지는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란? 사업(임대)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1년도는 월평균 2,539,734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

※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조정

(단, 사망일이 201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출생연도	1953~1956년생	1957~1960년생	1961~1964년생	1965~1968년생	1969년생~
해제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 사망자의 25세 미만(2016.11.29.이전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가 있는 경우 공단에서 정한 별도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인정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90 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얼마전 재혼하셨는데 제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때에 법 제73조의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다면 유족연금 수급권을 변경 취득할 수 있음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당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녀가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재혼·사망으로 소멸된 때에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을 승계하여 계속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단,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지 않았을 것)

유족연금은 법 제73조의 유족 중 최우선순위자에게만 지급되나, 배우자의 수급권이 소멸·정지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망 당시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가 수급권을 변경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 정지된 때에 자녀에게 수급권 소멸사유가 없고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므로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여야 하며, 입양 등의 지급정지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91 교통사고로 배우자가 사망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했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제3자의 행위로 사망하여 손해배상금 수령시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제 114조)

이는 동일한 사유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어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시 사망원인, 제3자 가해유무, 손해배상금 수령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92 배우자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신청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절반만 지급
-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으로 중복지급 제한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과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물론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른 한쪽에서는 그만큼 급여를 조정 또는 제한함으로써 특정사고에 대하여 급여가 중복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93 가입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는 사망일시금 지급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유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연령, 장애요건 등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94 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찾을 수 있나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60세 도달시 10년*간 또는 사망 시 5년간 다시 청구 가능
* 2018년 1월 25일 개정법 시행 이후 60세에 도달하거나, 시행일 당시 종전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건부터 적용(종전법 적용 대상의 경우 60세 도달시 5년간 다시 청구 가능)

반환일시금 지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한 경우(2007년 7월 23일 전에 60세에 도달하고 2007년 7월 23일 이후 사망한 자도 포함)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지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 시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외이주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었는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향후 60세에 도달하면(사망하면 5년 이내) 10년 이내에 다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된 기간도 납부기간에 포함되어 연금액 산정

95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이민을 가는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거나 출국 후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예. 외국으로 이민 갈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분이 해외이주신고하거나 거주여권(2017년 12월 21일 여권법 및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폐지)을 발급 받은 경우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청구 가능)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쿠비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지사방문 또는 홈페이지 서식함)
- 본인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서명가능)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권정보증명서는 국내외 여권접수기관 및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전 청구시 비행기 티켓(1개월 이내 출국예정)

96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외국인의 경우 출국 확인 후 반환일시금 지급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 출국 확인 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외국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② 대한민국과 외국인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 단, 사회보장협정국(가입기간합산) 중 아일랜드,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의 경우는 해당국 요청으로 반환일시금 미지급
- ③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2020.12.1. 기준)

국적에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 (21개국)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 (24개국)		
		최소 가입기간 6개월 이상 (1개국)	최소 가입기간 1년 이상 (7개국)	최소 가입기간 관계없이 인정(16개국)
E-8 / E-9 / H-2	독일/미국/캐나다/ 체코/헝가리/호주/ 프랑스/벨기에/ 불가리아/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인도/ 터키/스위스/ 브라질/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벨리즈	그레나다/ 요르단/ 세인트빈센트 그라나딘/ 짐바브웨/ 카메룬/ 태국/부탄	가나/스리랑카/버뮤다/ 말레이시아/ 엘살바도르/인도네시아/ 케냐/카자흐스탄/홍콩/ 트리니다드토바고/수단/ 콜롬비아/바누아투/ 필리핀/튀니지/우간다

*인도, 터키, 스위스는 상응성 인정국으로 반환일시금 지급 중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반환일시금 지급이 가능해진 국가임

97 형편이 어려운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연금수급 연령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 법에 정한 사유로만 지급

형편이 어려운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시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본래 목적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국외이주·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환일시금 제도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연금제도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아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미 대부분의 국가가 반환일시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으며, 앞서 말씀드린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납부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98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는데 제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인 전업주부는 당연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임의가입이라고 함), 10년 이상 납부하면 나중에 연금 받을 수 있음

배우자분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향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업장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그 성격은 유사하지만 적용대상이 다릅니다. 이 외에 군인에게는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 직원들에게는 별정우체국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배우자(남편)분께서 공무원연금 가입자이고 본인이 전업주부라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임의가입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평생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9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부부가 가입한 경우 각자의 노령연금은 당연히 각각 받을 수 있음
- 단,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와 “유족연금 전액” 중 선택해야 함

예,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둘 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을 가입하여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부인이 20년을 가입하여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두 분 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 이상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100 장애등급 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았을 때 향후 노령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일시금 수령 후 노령연금도 수급 가능
-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67개월이 안됐을 경우 노령연금은 일정기간 경과 후 지급

장애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으신 후에 노령연금이 발생하는 경우 노령연금도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67개월(이하 환산기간이라 함)이 경과되기 전에 노령연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둘 중 하나의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모두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로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일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 한정된 수급자의 이중 혜택을 위하여 더 많은 보험료가 납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선택한 하나의 급여만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이거나 반환일시금인 경우에 한해 선택하지 않은 급여를 일부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그런데 장애등급이 4급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67개월분이 한꺼번에 지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환산기간(67개월) 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바로 받으실 수 있지만, 환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환산기간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액을 노령연금액으로 모두 총당한 후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으셨는데 장애가 악화되거나 또 다른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등급이 3급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을 경우에도 환산기간에 따라 이와 유사하게 금액조정을 합니다.

V. 온통프로 우수답변

- 기금소진
- 징수권 소멸
- 사회보장협정
- 4대보험
- 추납 금액 변경 신청 가능여부
- 반환일시금
- 공적연금 연계
- 분할연금
- 사망일시금
- 대학생 국민연금

기금 소진 | 2020. 3.



안녕하세요,

주변에서 쓸데없는 걱정 너무한다는 소리 듣는 20대 초반 청년입니다.

근래에 재무 상담을 받으며 2052년에 국민연금공단이 무너지고,

앞으로 연금 수령하기 어려울 거라는 말을 들으니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를 준비하는게 나쁜건 아니지만, 제가 너무 쓸데없이 걱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 청년들도 미래에 국민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보장받을 수 없다면 국민연금을 왜 내고 있는지ㅠ 싶기도 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20대 초반에 벌써부터 재무 설계를 준비하신다니 대단하십니다!

국민연금이 고갈 가능성에 충분히 걱정하고 궁금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되어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급합니다.

아마도 국민연금 기금소진 관련 기사를 보신 것 같습니다. 이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에서 ‘기금소진’ 부분을 부각하다보니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적지 않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는 현재의 보험료율(소득의 9%)과 미래의 경제성장률 및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 2057년경(제4차 재정계산 기준)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으로, 여러 상황이 변동되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한 예로,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소진년도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렇게 향후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정부는 기금소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금이 소진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출산율의 저하인데, 설령 앞으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를 도입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금운용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마산지사 김영진 대리

징수권 소멸 | 2020. 3.

Q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징수권이 소멸되면,
그 전에 납부했던 국민연금 내역도 모두 다 소멸되나요?
그리고 추후 몇년 뒤 국민연금 가입이 제한되나요?

A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이란, 국민연금법 제9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보험료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본인이 원해도 납부할 수 없고 강제징수도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단,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전에 납부했던 국민연금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 가입이력으로 남아있고 국민연금 가입이 제한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징수권이 소멸된 기간도 미납한 기간으로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장애, 유족연금 수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징수권이 소멸되기 전 미리미리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납액 납부관련 상담은 국민건강보험콜센터(1577-1000)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대구지역본부 이은숙 차장

사회보장협정 | 2020. 5.



안녕하세요 뉴질랜드인으로서 한국에서 사업 및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한국인 아내를 맞아 가족도 있구요.
 지난 달까지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하였고,
 이번 달부터는 대표이사직에서 사내이사 직으로 변경되면서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혹시 그간 납부하였던 국민연금을 반환할 수 있나요?
 뉴질랜드와 사회보장협정이 맺어졌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입니다.

외국인의 반환일시금 청구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만 지급이 됩니다.

1.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체류자격 및 국가 포함여부

- 사회보장협정 대상국 - 21개국
- 상응성 인정 대상국 - 24개국
- 체류자격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2. 일시출국이 아닌 영구출국

현재 뉴질랜드와 한국은 사회보장협정이 맺어지지 않았습니니다. 또한 상응성 인정 대상국에도 포함되지 않기에 체류자격 요건만 해당이 됩니다.

즉 체류자격이 E-8, E-9, H-2 였을때 납부했던 보험료만 영구출국 시점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뉴질랜드는 사업장/지역 모두 당연적용국으로 소득이 있다면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4대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사업장가입자로, 사업소득, 기타소득만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는데요. 120개월 이상 납부한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나 콜센터에서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4대 보험 | 2020. 7.



2020년 2월 19일 부터 일해서 현 시점까지 일하는데 이번에 4대보험 가입을 하자고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한 6개월을 한번에 내야 된다고 합니다.

1. 이런 경우 4대보험 신청 전까지 포함한 보험비를 내야하는건지
2. 정확히 요식업경우 4대보험 가입을 한다면 정확히 어디서 확인을 해야되는지
4대 보험비가 월급의 10%가 정확한건지
3. 만약 2월 19일부터 4대보험 가입처리가 된다면 현 시점까지 인정이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4대보험 소급 취득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근로자 가입신고를 할 때는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내방, 팩스,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www.4insure.or.kr) 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취득신고의 경우 4대보험 공통신고 업무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중 연락을 주시면 신고방법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국민연금의 경우, 입사 첫달이 1일 입사가 아닌 경우는 그 달은 납부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0.2.19(납부희망)의 경우 2020.2-7월분 납부, 2020.2.19(납부미희망)의 경우 2020.3-7월분 납부)

2. 각 보험료의 보험료율이 상이합니다.(2021년 기준)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급여)의 9%(근로자 4.5%, 사업주 4.5%) 부담
-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6.86%(근로자 3.43%, 사업주 3.43%)부담
- 고용보험 : 보수월액의 0.8%(근로자)
- 산재보험 : 업종에 따라 차이 있으며 사업주 전액 부담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1.52%(근로자, 사업주 반반 부담)⇒건강보험료에 합산 부과

3. 네. 가입기간은 사업장 취득부터 인정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또는 사업장관할지사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납 금액 변경 신청 가능여부 | 2020. 8.



국민연금 추납 금액을 신청했는데
금액을 변경하고 싶는데 추납으로 내기로 한 금액을 변경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1. 우선 추납금을 분할 신청하셨다가 1회차라도 납부하신 경우에는 추납금 신청이 불가능하고, 추납 금액 변경이 불가합니다.
2. 추납금은 전액 미납한 경우에만(신청하고 내지 않은 경우에만), 기존의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재신청 가능합니다.
3. 금액을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 추납금은 추납 가능한 납부예외·적용제외기간 *신청당월의 연금보험료이기 때문에, 연금보험료(기준소득월액)를 변경한 후 다시 신청하셔야합니다.
4. 단, 연금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할 수 없으며, 지역가입자인 경우 본인이 소득이 있으신 경우 본인의 소득보다 연금보험료를 낮출수는 없습니다. 즉,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기준소득월액을 본인이 희망하는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하시면 신청한 다음달부터 변경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기준소득월액 200만원(연금보험료 9% 18만원)⇒기준소득월액 100만원(연금보험료 9% 9만원)으로 변경신청하시면 9월부터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연금보험료 9% 9만원)으로 변경됩니다.

5. 따라서 신청한 추납을 납부하지 않으셨고, 지역가입자로서 본인의 소득보다 높게, 또는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는 낮게 변경 신청가능한 경우에, 추납을 취소 신청하시고 기준소득월액을 변경신청한 다음달부터 변경된 금액으로 추납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국번없이 1355(유료)로 전화주시거나 관할 지사로 내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연금급여실 차현경 대리

반환일시금 | 2020. 9.

Q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꼭 60세가 되어야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혹시나 방법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1.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3가지로 첫 번째는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두 번째는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세 번째는 사망입니다.
국적상실과 사망의 사유도 있기 때문에 60세가 되어야만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객님의 상황을 보았을 때 60세 도달하는 것 이외에 받을 수 있는 사유(국외이주 또는 사망)에 해당되지 않아 받을 수 없음에 양해부탁드립니다.
2. 또한 고객님의께서 이미 10년 이상 납부를 하셨고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면 국민연금법 제79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어 평생 연금으로 받으셔야하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각 생년월일에 따라 다릅니다.

단, 조기노령연금으로 원래 받으셔야하는 지급연령에 도달한 때보다 5년 일찍 앞당겨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각 생년월일에 따른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2.jsp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또는 국번없이 1355(유료) 또는 관할 지사에 전화부탁드립니다.

투병 생활로 많이 힘들실텐데 조금이라도 더 쾌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연금급여실 차현경 대리

공적연금 연계 | 2020. 9.



국민연금을 5년 넣었다가 사학연금으로 자동 전환되었어요
검색해보면 사학연금은 국민연금대상이 아니라고하는데...

국민연금은 10년이상넣어야 나이들었을때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저는 국민연금을 못받게 되나요? 중간에 사학연금으로 바뀌었으면 제가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이면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통해 각각의 가입기간에 대한 국민연금과 타공적연금을 모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5년과 사학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이 되시면 각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연계신청은 사학연금 가입자가 된 때(기한 :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되기 전까지) 하시면 되고, 향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시면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사학연금에 대해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각각 지급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적연금연계제도 사이트(www.ppsl.or.kr)에서 확인가능하시고,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나 가까운 지사에서 상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 황혼 이혼을 하셨습니다.
다른 재산분할은 제쳐두고 국민연금분할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현재 부친께서는 국민연금 수급중이고, 모친께서는 연세가 60세로
아직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분할을 신청하면 부친이 수급중이므로 반액을 지급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나이가
될 때까지 못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재산분할은 5대5로 하고 협의이혼입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문의에 대한
안내입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란 혼인기간 동안 이혼한 배우자가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여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혼인기간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가 5년 이상일 경우 분할연금수급요건에는 해당될
것입니다.

분할연금수급요건은

- 혼인기간 중 연금보험료 납부한 가입기간[납부월수]이 5년 이상이고
- 배우자와 이혼
- 배우자였던 사람이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생존 중
-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였을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수령 중이며 본인의 연령이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였을 때
분할연금을 청구하게 되면 혼인기간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로 발생된 연금액의 50% 수령이
가능합니다.(분할연금 비율은 상호 협의 가능)

이혼 후 3년 이내 신청구를 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급권 발생은 연령도달이
되어야 하며 수급권 발생 시점에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수령 중일 경우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 등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문의 시 상세안내가 가능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사망일시금 | 2020. 10.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국민연금에 어머니가 납부하신 금액 환수 신청하고 왔습니다.

저는 35세이고 사망일시금밖에 신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총납부하신 금액은 11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환급금액은 400만원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납부 금액 전체를 못돌려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이 때, 유족의 범위는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1.1. 이후인 경우에 한함)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일정한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73조의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며,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도 없으면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하되,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의 급여인 점을 감안하여 최종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한도액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인사혁신실 김연희 대리

대학생 국민연금 | 2020. 10.



제가 인턴으로 두달가량 일해서 의무가입으로 국민연금을 한달정도 냈는데 전화해보니 나중에 직장을 갖고 추가납입하거나 안하거나 선택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취직하려고 3년 남았는데 약학대학 학생이라 취직시에 월 400~500정도 벌것이라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마 연금으로 50씩 나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1. 취직전까지 임의 연금으로 9만원씩 3년 먼저 내는것이 가능한가요?
2. 만약 가능하다면 임의연금으로 9만원씩 3년 내기 or 취직 후 의무연금으로 50 두번 내고 3년 추가납입하기 or 취직 후 의무연금으로 추가납입없이 진행... 무엇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현재 국민연금 최고 상한액은 5,030,000원으로 월 보험료는 452,700원입니다. 직장 재직시에는 근로자 부담금 226,350원을 납부하실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발생시 납부대상으로 소득이 없는기간은 예외신청을 할수 있으나 본인 희망시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시 1. 보험료 9만원으로 3년 납부 2. 취직 후 3년 추납 3. 취직후 납부 세가지 경우로 문의하셨는데,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번째 경우에는 보험료 월 9만원은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기준이나, 국민연금은 연금액 결정산식에 가입자평균보험료도 산정되기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계속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연금액 산정시 지급률이 높아져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9만원씩 10년 납부하면 18만원 가량을 수령할 수 있지만, 보험료 18만원씩 납부하면 23만원 가량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취직후 3년 추납을 할 경우에는 공백기간 3년간의 보험료는 추납신청당시 납부하고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많은 보험료를 내고 많은 금액이 인상되나 총 납부금액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9만원씩 3년을 납부시에는 $90,000 * 36\text{개월} = 3,240,000\text{원}$ 만 납부하면 되나, 취직후 납부시에는 $452,700\text{원} * 36\text{개월} = 16,297,200\text{원}$ 으로 납부금액의 차이가 큼니다.

세번째로 취직후 납부시에는 당장은 부담이 없으나 알고계신 바와 같이 연금보험료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가산되며, 9만원씩 20년 납부한 사람이 18만원씩 10년 납부한 사람보다 수령금액이 크기 때문에 노후를 생각한다면 적은 금액이더라도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현재 보험료는 납부하실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월 9만원씩 꾸준히 납부하시고, 추후 노후대비를 위해 최대한 많은 금액을 수령하고 싶으시다면 취직 후 납부하시는 방법이 노후대비에 유리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부산사상지사 제석우 대리



2021 국민연금
100문 100답

[부록]
연린이를 위한
연금용어



연린이를 위한 연금용어

평생월급을 받다



뜻풀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20개월 이상 되었을 경우
노후에 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부터
매월, 평~생 받는 것을 의미한다.



예문



부모님이 올해부터 국민연금 받을 수 있다는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연금을 받은 이후부터 평~생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생월급 받는다고 하죠.





연린이를 위한 연금용어

연금맞벌이를 하다



뜻풀이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함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예문



저희 부부는 각자의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 노후가 더 든든해집니다. 그래서 연금을 '맞벌이한다'라고 표현해요.





연린이를 위한 연금용어

임의가입을 하다



뜻풀이

학생과 주부 등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예문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 저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어도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준비를 할 수 있어요
이걸 바로 **‘임의가입을 한다’**고 해요.





연린이를 위한 연금용어

내 연금을 조회하다



뜻풀이

국민연금의 '내연금' 사이트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예상연금액**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예문



회사에 다니면서 매월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나중에 받을 연금을 미리 확인 할 수 있나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차곡차곡 쌓여가는 나의 노후자금을 확인 할 수 있어요. 이걸 바로 내 연금을 조회하다라고 해요.





연린이를 위한 연금용어

연금받는 시기를 미룬다



뜻풀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지만
소득이 있거나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고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는 것을 말한다.



예문



제가 다음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요... 혹시 연금을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금받는 나이를 늦추는 대신,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더 많아져요.
이걸 바로 **‘연금 받는 시기를 미룬다’**라고 해요.



국민연금 100문 100답

주 소 5487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홈페이지 <https://www.nps.or.kr>

0A32-202012-PM-789



[5487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고객상담 및 문의 **국번없이 1355**(유료) www.nps.or.kr